
규정집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2015. 6. 5

기 계 항 공 공 학 부

목 차

I. 일 반	1
I-1. 기계항공공학부 규정	1
I-2. 학부장 선출에 관한 규정	5
II. 인 사 및 업 적 평 가	6
II-1. 인사업적평가위원회 규정	6
II-2. 전임교수 승진 임용 및 정년 보장 임용 규정	7
II-3. 대학원생 우수 논문상 규정	9
II-4. 연구년 교수 추천 규정	10
III. 교 육	11
III-1. 교과목 이수규정	11
III-2. 복수 전공 선발 규정	13
III-3. 부전공 선발 및 이수에 관한 규정	14
III-4. 전과(부) 선발 및 이수에 관한 규정	16

I. 일 반

제정 1998.05.25.
 개정 2000.07.24.
 개정 2004.01.01.
 개정 2006.04.27.
 개정 2010.04.26.
 개정 2012.10.05.
 개정 2015.06.05.

I-1. 기계항공공학부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이하 '학부')의 운영을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구성 및 조직)

1. 학부 내 교과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계공학전공과 우주항공공학전공을 둔다.
2. 학부에는 학부교수회, 인사업적평가위원회, 기획위원회, 교무위원회, 학생위원회를 둔다.

제3조 (의결)

1. 학부교수회 및 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학부장, 전공주임과 부학부장)

1. 학부장은 '학부장 선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2. 전공주임은 학부장이 속하지 않는 전공에서 임명한다.
3. 부학부장은 학부장과 전공주임이 협의하여 각 전공에서 3인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4. 학부장, 전공주임과 부학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
5. 학부장은 전공주임과 협의하여 학부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제5조 (학부교수회)

1. 학부교수회의 의장은 학부장이 된다.
2. 학부교수회는 학부장 또는 학부재적교수의 1/4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3. 학부교수회는 다음 사항들을 토의, 의결한다.
 - (1)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2) 학부장 및 인사업적평가위원회 위원 인준
 - (3) 학부 예산 및 결산 승인
 - (4) 학부장 또는 학부 재적교수 1/4 이상이 상정한 사항
4. 규정의 개폐 등 주요 의결 사항에 관한 학부교수회의를 개최할 시에는 회의 전일까지 안건을 학부 교수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인사업적평가위원회)

인사업적평가위원회는 학부장, 전공주임, 선출직 위원 6인으로 구성하며,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선출직위원 6인은 각 전공에서 선출된 전공인사업적평가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때 기계공학전공은 4인, 우주항공공학전공은 2인을 각 전공에서 선출한다. 인사업적평가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1. 전임교원(조교 포함)의 신규 임용 심사 및 추천
2. 전임교원의 승진 임용 심사 및 추천
3. 전임교원(조교 포함)의 재임용 및 정년보장 임용 심사 및 추천
4. 명예교수 추대 추천
5. 계약교수 임용 추천
6. 객원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임용 추천
7. 학부교수의 연구업적, 산학협동기여도 및 학내외 봉사활동의 정기적 평가
8. 강의 평가 절차 결정
9. 대학원생 논문상 수상자 결정
10. 학내외 우수 업적 교수 추천 등
11. 학부장과 학부교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7조 (기획위원회)

기획위원회는 학부장(위원장), 전공주임과 임명직 위원 6인이내(기계공학전공과 우주항공공학전공 기획위원)로 구성한다. 임명직 위원은 각 전공에서 학부장과 전공주임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고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 학부장은 사안에 따라 그 업무를 각 전공의 기획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기획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심의
2. 행정지침의 제정 및 개정 의결
3. 학부 발전 계획
4. 학부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
5. 직원 담당업무 분장
6. 국내, 국제 대외 협력 및 산학협력
7. 학부 예산 및 결산, 기금 모금 및 관리

8. 기타 학부장과 학부교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8조 (교무위원회)

교무위원회는 학부장(위원장), 전공주임과 임명직 위원 6인이내(기계공학전공과 우주항공공학전공 교무위원)로 구성한다. 임명직 위원은 각 전공에서 학부장과 전공주임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고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 학부장은 사안에 따라 그 업무를 각 전공의 교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교무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1. 학부 교과과정 운영
 - (1) 교과목 신설 및 폐지
 - (2) 강의시간표 및 담당교수 결정
 - (3) 시간강사 및 CEO 강좌 담당 교수 결정
2. 강의 지원 조교 선정 및 지원
3. 출제, 채점, 감독, 관리를 포함하는 제반 시험업무
4. 논문지도교수, 논문제출자격시험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부장과 학부교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9조 (학생위원회)

학생위원회는 학부장(위원장), 전공주임과 임명직 위원 6인이내(기계공학전공과 우주항공공학전공 학생위원)로 구성한다. 임명직 위원은 각 전공에서 학부장과 전공주임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고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 학부장은 사안에 따라 그 업무를 각 전공의 학생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학생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1. 면담제도 운영 등 학생지도에 관련된 사항
2.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부 MT, Open-Lab 등 학생행사에 관련된 사항
3. 2학년 진입생 대상 전공 배정
4. 장학생 선발 (교내 및 교외 장학생 추천)
5. 외국인학생 지도
6. 학부 홈페이지 관리 및 학부소개책자 제작
7. 기타 학부장과 학부교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0조 (규정의 개폐)

학부규정의 개정, 발의는 학부장 또는 재적교수 1/4이상의 요청으로 한다.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을 위한 학부교수회의 의결은 학부재적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I-2. 학부장 선출 규정

제정 2008.01.16.

개정 2010.04.26.

개정 2012.10.05.

개정 2015.06.05.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기계항공공학부 학부장 선출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후보 추천)

학부장 후보는 각 전공 교수회의를 통하여 추천할 수 있다. 이때 기계공학전공의 경우 연속 2회, 우주항공공학전공의 경우 1회에 한하여 학부장을 맡을 수 있으며, 이 회수가 지나면 현 학부장이 속하지 않은 타 전공에서 학부장 후보 추천권이 있다. 단, 해당 전공에서 책임자가 추천되지 않는 경우는 타 전공에서 학부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3조 (일정 공고)

현 학부장은 학부장 선출 일정을 학부교수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선출)

현 학부장은 전공에서 추천된 학부장 후보를 학부교수회에 추천하고 학부교수회에서 인준한다. 차기 학부장 선출은 현 학부장의 임기 만료 일주일 전에 완료한다.

II. 인 사 및 업 적 평 가

II-1. 인사업적평가위원회 규정

제정 2012.10.05.

제1조 (위원장)

1. 인사업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학부장으로 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관장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조 (회의)

1. 인사업적평가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인사업적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한 제척위원이 있는 경우의 위원정수는 제척 위원 수를 감한 수로 한다.

제3조 (제척위원)

인사업적평가위원회 회의 안건 중 위원 본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조 (회의록)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가 작성하고 위원장의 확인 날인 후 보관한다.

제5조 (보고)

위원장은 인사업적평가위원회 심의경위와 결과를 학부 교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II-2. 전임교수 승진 임용 및 정년 보장 임용 규정

제정 2004.01.01.

개정 2012.10.05.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기계항공공학부 전임교수의 승진 임용 및 정년 보장 임용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

교수의 승진 및 정년보장 추천은 인사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인사업적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 ① 연구활동 ② 교육활동 ③ 봉사활동
2. 승진 심사 평가 항목은 공과대학 "전임교수 승진 임용에 관한 시행 세칙"을 따른다.

제3조 (직명별 연구업적의 수량적 요건)

각 직명별 승진 임용 추천은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승진 임용 관련 규정과 그 상위 규정이 정하는 바를 만족하고 또한 아래에서 정하는 바를 만족하여야 한다.

1. 조교수에서 부교수로의 승진 시에는 조교수 기간 중 서울대학교명으로 발표 또는 발표 확정된 2건 이상의 국제적 수준 연구업적을 포함한 4건 이상의 국제적 수준 연구업적이 있어야 한다.
2. 부교수에서 교수로의 승진 시에는 부교수 기간 중 서울대학교명으로 발표 또는 발표 확정된 5건 이상의 국제적 수준 연구업적을 포함한 10건 이상의 국제적 수준 연구업적이 있어야 한다.
3. 국제적 수준 연구 업적물은 승진대상자가 제 1저자 이거나 교신저자인 업적물에 한하며 공저자수에 관계없이 1편당 1건으로 산정한다.

제4조 (국제적 수준 업적)

전임교수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 규정에서의 국제적 수준 연구 업적물이란, SCI(science citation index)/SCIE 등재 학술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출판사에서 영어로 출간된 전공 도서를 뜻한다. 단, 이 이외의 경우에는 인사업적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하여 국제적 수준의 연구 업적물 여부를 결정한다.

II-3. 우수 박사학위 논문상 규정

제정 2004.01.01.

개정 2012.10.05.

제정 2014.09.15.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학원생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재학 기간 중 연구 업적을 평가하여 우수 박사학위 논문상을 수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시기)

매년 1월 중 우수 박사학위 논문상 수상을 위한 지원을 공고하고 2월에 평가하여 결정한다.

제3조 (대상)

당해년 박사 학위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평가)

인사업적평가위원회는 국제 학술지 논문, 국내 학술지 논문, 학술대회 논문, 산학연구실적, 대학원 성적 등을 평가하여 세부 전공 분야별로 약간 명의 수상자를 결정한다.

II-4. 연구년 교수 추천 규정

제정 2002.02.01.

개정 2012.10.05.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부 소속 교수들이 연구년을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년 제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학부의 연구년 교수 추천 순위의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순위 결정)

- (1) 추천 순위는 학부 연구년 교수 추천 지침에 따라 인사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 (2) 다음해 연구년 교수 추천 대상자는 당해년 5월에 결정한다.

제3조 (연구년 교수 추천 대상자 통보)

- (1) 다음해에 연구년 교수의 자격이 있는 해당 교수에게 연구교수 추천 대상자가 되었음을 5월 31일 이전에 통보한다.
- (2) 기계공학전공과 우주항공공학전공별 추천인원은 해당 전공의 교수 수에 비례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연구년 교수 포기)

1. 개인 사정상 신청한 연구년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는 즉시 (공과대학에 연구교수 추천 대상자를 제출하는 시점의 1개월 이전) 학부에 통보하여 다음 순위의 교수가 연구년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이 경우 벌점은 없다.
2. 1 항에 명시된 시점 이후에 포기의사를 밝힐 경우 24개월(1년 연구년 교수 기준) 또는 12개월(6개월 연구년 교수 기준)의 기간을 해당 교수의 총 점수에서 감한다. 단 공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Ⅲ. 교 육

Ⅲ-1. 교과목 이수규정

제정 2010.12.01.

개정 2012.10.05.

개정 2014.01.10.

제1조 학사 이수규정

기계항공공학부 기계공학전공 또는 우주항공공학전공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서울대학교 졸업학점 1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양 40학점 이상, 전공 6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기계공학전공 또는 우주항공공학전공 이수규정과 공과대학 이수규정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제2조 대학원 이수규정

기계항공공학부 기계공학전공 또는 우주항공공학전공 대학원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석사 24학점 이상, 박사 36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계공학전공 또는 우주항공공학전공 이수규정과 공과대학 이수규정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2년 10월 5일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4년 01월 10일 개정 시행한다.

(경과조치) 전공별 이수규정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생은 이전 이수규정을 따른다.

Ⅲ-2. 복수 전공 선발 규정

제정 2008.03.01.

개정 2008.08.01.

개정 2014.01.10.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복수전공 선발규정을 근거로 기계항공공학부(이하'학부') 기계공학전공과 우주항공공학전공 학사과정의 복수전공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신청자격)

복수전공 이수 신청 자격은 3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하고(이수예정자 포함) 36학점 이상 취득한 이후, 평점평균 2.7(B-)이상인 자로 한다.

제 3조 (선발인원 및 기준)

1. 학부 기계공학전공 또는 우주항공공학전공 복수전공 이수자의 연간 선발인원은 해당전공의 기계공학전공 또는 우주항공공학전공 3학년 정원 이내로 한다.
2. 복수전공 이수자의 선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성적(80%)
 - (2) 면접 및 구술고사(20%)

제 4조 (재학연한)

이수자의 재학 연한을 1년간 연장 할 수 있다.

제 5조 (과정이수 학점)

기계공학전공 또는 우주항공공학전공에서 정한 4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4년 01월 10일 개정 시행한다.

(경과조치) 전공별 이수규정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생은 이전 이수규정을 따른다.

Ⅲ-3. 부전공 선발 및 이수에 관한 규정

제정 2008.03.01.

개정 2008.08.01.

개정 2014.01.10.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부전공 선발규정을 근거로 기계항공공학부(이하 '학부') 기계공학전공과 우주항공공학전공 학사과정의 부전공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신청)

부전공 이수의 신청 자격은 3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하고(이수예정자 포함) 36학점 이상 취득한 이후, 성적 2.7(B-)이상인 자로 한다.(2007학번 이전 입학자는 33학점 이상 이수자도 지원 가능)

제 3조 (선발인원 및 기준)

1. 학부 기계공학전공 또는 우주항공공학전공 부전공 이수자의 연간 선발인원은 해당 전공의 3학년 정원 이내로 한다.
2. 부전공 이수자의 선발 방법은 성적 100%로 한다.

제 4조 (과정이수 학점)

기계공학전공 또는 우주항공공학전공에서 정한 2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4년 01월 10일 개정 시행한다.

(경과조치) 전공별 이수규정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생은 이전 이수규정을 따른다.

Ⅲ-4. 전과(부) 선발 및 이수에 관한 규정

제정 2014.01.10.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과(부) 선발규정을 근거로 기계항공공학부(이하 '학부') 기계공학전공과 우주항공공학전공 학사과정의 전과(부)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신청)

전과(부) 지원자격은 4회 이상 등록하고 소속대학의 제2학년 수료학점(6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3학년 수료학점(98학점)에 미만이 되는 자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은 예과과정의 등록횟수 및 이수학점을 포함할 수 있음.

*전과(부) 지원자의 취득학점이며, 계절학기 이수중인 학점은 제외

제 3조 (선발인원 및 기준)

1. 학부 기계공학전공 또는 우주항공공학전공 전과(부) 이수자의 연간 선발인원은 해당 전공의 3학년 정원의 20/100 이내로 한다.
2. 전과(부) 선발 방법은 전공시험, 성적, 면접 및 구술고사로 순으로 진행되며 과락기준(3개항) 중 1개항이라도 적용되면 불합격 처리된다.
 - (1) 전공시험(공학수학 및 기계공학전공 또는 우주항공공학전공 2학년 필수과목) :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 불합격
 - (2) 성적 : 평점평균 3.0 미만 불합격
 - (3) 면접 및 구술고사 : A, B, C급으로 구분, C급 불합격

제 4조 (과정이수 학점)

기계공학전공 또는 우주항공공학전공에서 정한 교과이수 규정에 따라야 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전공별 이수규정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생은 이전 이수규정을 따른다.